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 박주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전체회의(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주민의원)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

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허가 신고를 할 때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를 허가하였음.

현재 총포 소지 허가의 경우 신체검사서와 더불어 정신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도검 등의 소지 허가 규제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화약류 등의 경우에도 소지 허가를 신고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제출하도록하여, 소지 허가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서기영)

가. 총포등·소지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모경종·임이자의원안)

모경종·임이자의원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현행 5년의 결격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제

114조), 상해·폭행에 관한 죄(같은 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모경종의원안) 또는 20년(임이자의원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 행	모경종의원안	임이자의원안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3. (생 략) <신 설>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삭 제>	<삭 제>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제3호의2----------7년----------7년----------	6의2. 제3호의2----------10년----------10년----------
가. 「형법」 제114조의 죄	<삭 제>	<삭 제>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삭 제>	<삭 제>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삭 제>	<삭 제>
6의3. ~ 7. (생 략)	6의3. ~ 7. (현행과 같음)	6의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반복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총포등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것은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폭행·상해의 죄 등도 총포등을 사용할 경우 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소지허가 결격기간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결격기간이 10년 또는 20년으로 결정되는 범죄들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지허가 금지 기간에 차등을 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임이자의원안의 경우 결격기간을 일괄하여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획일적으로 20년간 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는데,

<범죄 유형별 법정형>

범죄 유형	법정형
단순 스토킹	3년↓징역 또는 3천만원↓벌금
흉기이용 스토킹	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형법상 상해	7년↓징역, 10년↓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형법상 폭행	2년↓징역 또는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징역
특정강력범죄	사형, 무기(강간·강도살인) ~ 2년↑징역(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무기, 5년↑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5년↑징역

이를 감안하여 비록 총포등의 소지 허가를 직업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법익과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하고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한 입법례>

▸ **(모자보건법)** 아동학대범죄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20년간 산후조리도우미 불가[1)]

▸ **(영유아보육법)** 아동학대범죄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20년간 어린이집 운영 불가[2)]

▸ **(국민체육진흥법)**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 20년간 체육지도자 불가[3)]

---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생 략)
③ ~ ④ (생 략)

2)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도록 소지 허가 기간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총포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을 낮추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결격기간의 범위 결정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격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도검 등의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성격장애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의무화(고동진·박주민·민홍철·임이자·진종오의원안)

현행 「총포화약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등(이하 '도검등')의 허가의 경우 정신질환이나

---

7. ~ 9. (생 략)

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 6. (생 략)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개정안들은 도검등의 소지허가 신청 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 행	고동진의원안	박주민의원안	민홍철의원안	임이자의원안	진종오의원안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①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경우에는	------	--------	--------	--------	--------
행정안전	------	--------	--------	--------	--------
부령으로	------	--------	--------	--------	--------
정 하 는	------	--------	--------	--------	--------
바에 따	------	--------	--------	--------	--------
라 다음	------	--------	--------	--------	--------
각 호의	------	--------	--------	--------	--------
구 분 에	------	--------	--------	--------	--------
따라 허	------	--------	--------	--------	--------
가를 받	------	--------	--------	--------	--------
아야 한	------	--------	--------	--------	--------
다. 다만,	------	--. <단	-. <단서	--.<단서	- - - .
제1호 및	------	서 삭	삭 제 >	삭 제 >	< 단 서
제2호의	------	제> 이	이 경우	이 경우	삭 제 >
총포 소	------	경우에는	총포·도	총포·도	이 경우
지허가를	------	신청인의	검·화약	검·화약	총포·도
받으려는	- 제1호	정신질환	류·분사	류·분사	검·화약
경우에는	부터 제3	또는 성	기·전자	기·전자	류·분사
신청인의	호까지의	격 장 애	충격기·	충격기·	기·전자
정신질환	------	등을 확	석궁 소	석 궁 의	충격기·
또는 성	------	인할 수	지허가를	소지허가	석궁 소
격 장 애	------	있 도 록	받으려는	를 받으	지허가를
등을 확	------	각 호의	사 람 은	려는 사	받으려는
인할 수	------	구 분 에	신청인의	람은 신	사 람 은
있 도 록	------	따라 행	정신질환	청 인 의	신청인의
행정안전	------	정안전부	또는 성	정신질환	정신질환
부령으로	------	령 으 로	격 장 애	또는 성	또는 성
정 하 는	------	정 하 는	등을 확	격 장 애	격 장 애
서 류 를	------	서 류 를	인할 수	등을 확	등을 확
허가관청	------	허가관청	있 도 록	인할 수	인할 수

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총포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신설>	4.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주소지를 관할하				

② ~ ⑤ (생 략)	는 경찰서장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최근 일본도 등 도검을 이용해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음. 개정안은 도검등의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사람이 도검등을 소지할 수 없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무허가 도검등을 이용한 범죄 사례>

► '22. 7. 13. 가게 운영 문제로 허가 없이 소지한 도검으로 동생의 처 협박(전남 담양)

► '22. 8. 26. 여자친구와 말다툼 하던 중 일본도로 소파를 찢으며 찌를 듯이 협박(인천 남동)

► '22. 11. 6. 집에 침입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스발사총을 발사하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려하자 경찰관을 향해 가스발사총을 발사(충북 청주)

► '23. 9. 5. 자해를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서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던 석궁을 쏠듯이 위협하며 공무집행방해(경기 부천)

► '24. 3. 30. 피해자와 채무관계에 있는 피의자가 소총1정 전자충격기 등을 휴대 후 찾아가 총구를 겨누며 위협(강원 춘천)

► '24. 4. 8. 관람용 열차를 중간에 세워주지 않는다며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 형태 장검으로 열차운전사 협박(경남 창녕)

► '24. 8. 19.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목부위를 향해 재크나이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방어함으로써 손가락 베임(대구 달서)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는 도검등에 대한 소지허가제도의 신뢰를 높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 도검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고동진·모경종·민홍철·임이자·진종오의원안)

개정안들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고동진·모경종·민홍철·임의자의원안 제16조2항, 진종오의원안 제16조제1항),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 실시 주기를 소지허가 갱신기간과 일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5항).

<조문대비표>

현 행	고동진의원안	모경종의원안	민홍철의원안	임이자의원안	진종오의원안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	제16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	제16조(총포·도검·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현행	제16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제16조(총포·도검·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현행	제16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

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과 같음)	허가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과 같음)	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신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를 받은 날부터 5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하여야 한다.	날부터 5년 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	④ 제1항 및 제2항--------.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생 략)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⑤ ---------	⑤ ---------	⑤ ---------	⑤ ---------	⑤ ---------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신청 전까지 교육을	2. -------------------------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전까지. --	2. -------------------------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전까지. --	2. ------------------------------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전까지. --	2. ------------------------- 제16조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전까지. --	2. ------------------------------ 제16조에 따른 갱신신청 전까지. --

유예한다. ⑥ (생략)	----. ⑥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 ------ ------ ------ ------ --. ⑥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도검 등’)의 소지 허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갱신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임.

도검 등 역시 총포와 마찬가지로 살상력을 갖춘 위험한 물건이고 2024년 8월 기준 소지허가 건수가 약 60만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부적격자가 이를 소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지허가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현황(24년 8월 기준)>

합계	총포(소계 : 107,742건)					도검 등(소계 :554,940건)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62,682	2,596	982	34,594	61,293	8,277	73,550	442,030	38,577	783

※자료 : 경찰청

또한, 총포 허가 건수(약 11만건)와 도검 등의 허가 건수(약 55만건)의 차이와 총포와 도검등의 위험성을 비교하면, 허가관청의 갱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검 등의 허가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대상 중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주로 호신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총포의 위험성에 비해 도검 및 기타의 경우에는 위험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른 국민의 부담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소지허가 수수료 현황>

허가 종류	수수료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3,000원
총포 소지허가	3,000 ~ 5,000원

※ 엽총·소총·권총은 5,000원, 기타 총(공기총, 타정총, 가스발사총 등)은 3,000원
※자료: 경찰청

참고로 경찰청은 도검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주기적·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조은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9건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